

부 록

-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291면
-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92면
-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295면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내역/296면
- 현안주요사업현지답사계획/297면
- '93의원해외연수추진계획/300면
- 영기든뫏도로포장사업조사계획/302면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서산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서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서산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산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서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여비지급구분표 및 여비정액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제5조 “별표”중 “이전비정액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6조의 1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같은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받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별표2의 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